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65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어울림플라자(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시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나.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안 제3조)

- 장애·비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다. 어울림플라자의 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6조)

- 이용료 부과·징수, 납부·반환, 이용 제한 등

라. 어울림플라자의 대관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12조)

- 대관 허가·취소, 대관료 부과·감면, 대관 제한 및 대관자의 의무 등

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3~16조)

-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2)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가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있음(반영)
 - 개선의견: 어울림플라자 이용대상 표현 수정, 이용료
감경대상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추가
 - 반영사항: 반영완료(제3조제1호, 제4조제2항제7~제8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7.18. ~ 2024.8.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원경진 (☎2133-7444)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라 한다)”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1동)에 설치한 복지문화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어울림플라자 내의 공연장,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수영장, 주차장 등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어울림플라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어울림플라자의 기능)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및 비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2.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의 이용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10. 65세 이상 어르신
11.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장 시설의 대관 등

제7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자가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1항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액
3. 대관자가 장애인 단체인 행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다만,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정치·종교 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대관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임의로 대관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대관신청인이 제8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7. 대관신청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상 대관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4장 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운영규정의 작성 등) ① 수탁기관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어울림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울림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연수교육		당일 반일 이내	15,000원 ~ 50,000원	○ 토요일, 공휴일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당일 전일(8시간)	30,000원 ~ 100,000원	
		1박2일 (12시간)	45,000원 ~ 150,000원	
		2박3일 (18시간)	67,000원 ~ 225,000원	
생활문화 생활체육		당일	5,000원 ~ 50,000원	
		1개월	40,000원 ~ 100,000원	
수영장	수강료	1개월 (주3회)	60,000원 ~ 100,000원	
	자유수영	1회	5,000원 ~ 10,000원	
연수객실(숙박)		1박	100,000원 ~ 140,000원	

※ 일반 프로그램 이용료이며, 그 밖에 무료 또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별표 2]

어울림플라자 시설 대관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공연장	350,000원 ~ 550,000원	1. 1회(4시간) 단가로서, 1회는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2:00)으로 함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다목적강당	250,000원 ~ 450,000원	
문화교실	10,000원 ~ 60,000원	1. 시간당 단가이며,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2.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대회의실(식당)	60,000원 ~ 120,000원	
세미나실	40,000원 ~ 80,000원	
분임토의실	20,000원 ~ 4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관료와 별도로 청구 가능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5년

- 비용지급대상 : 민간위탁기관(사무위탁), 서울주택도시공사(시설관리)

▶ 민간위탁기관 : 복지지원시설(연수시설, 문화시설), 주민편의시설(수영장, 문화·체육센터)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시설, 주차장, 건물관리, 청소, 보안 등 시설의 유지·관리

- 비용추계 내역

① 지출

▶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 어울림플라자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및 자산취득비(도서 및 물품 구입)

▶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 어울림플라자 재산(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수수료 지급(근거 : 공유재산 업무편람,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에 대한 위탁수수료)

- 총재산가액(총사업비+개발보수+공시지가)의 0.2~0.5% 지급

※ 시설별(관리범위별) 수수료율 차등 산정(민간위탁 범위 수수료율 0.2%, SH 임대관리 범위 0.5% 적용)

② 수입

▶ 어울림플라자 대관수입 및 이용료 수입: 어울림플라자 프로그램(문화, 체육, 교육연수) 이용료 및 시설(공연장, 다목적홀) 대관에 따른 수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지출	○ 민간위탁금	2,535,153	7,864,901	8,100,849	8,343,874	8,594,190	35,438,967
	○ 민간위탁사업비	1,940,000	30,000	30,900	31,827	32,782	2,065,509
	○ 공기관위탁사업비	92,320	369,282	380,360	391,771	403,524	1,637,257
	소계(a)	4,567,473	8,264,183	8,512,109	8,767,472	9,030,496	39,141,733
수입	○ 프로그램 이용료	353,190	2,099,160	2,162,135	2,226,999	2,293,809	9,135,293
	○ 대관료	20,800	124,800	128,544	132,400	136,372	542,916
	소계(b)	373,990	2,223,960	2,290,679	2,359,399	2,430,181	9,678,209
□ 총 비용(a-b)		4,193,483	6,040,223	6,221,430	6,408,073	6,600,315	29,463,524

※ 1차년도는 3개월(25.10~12월) 운영, 2차년도부터 연중 본격운영

※ 3차년도부터는 전년도 수입·지출 대비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여 비용추계함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4,567,473	8,264,183	8,512,109	8,767,472	9,030,496	39,141,733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4,567,473	8,264,183	8,512,109	8,767,472	9,030,496	39,141,733

※ 운영 중 발생하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

5. 덧붙이는 의견

- 어울림플라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위탁개발)에 따라 위탁개발로 조성한 사업으로, SH공사에서 어울림플라자 건립비용을 일부 투입함에 따라, 위탁기간(30년 이내)동안 개발비용(개발원리금) 및 관리수수료 등을 SH공사에 매년 지급하여야 함
- SH공사에서 공사채로 부담한 개발비용을 어울림플라자 임대료 수익으로 상환하고, 개발사업의 수입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출토록 사업 운영하게 됨
- 이에 따라, 어울림플라자 민간위탁에 대한 수입·지출 외 재산(건축물) 관리, 임대 관리 등에 대한 수입·지출은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포함하지 않음

< 공유지 위탁개발 추진 구조 >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위탁개발) 제3항 제2호
 -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공유재산 업무편람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 수탁기관은 자신의 회계와는 별도로 위탁기간 동안 개발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분양대금),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제반 수입 및 비용 관리
 -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실집행 금액으로 정산하며, 수탁기관은 재산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입금) 처리
- *지출경비 : 인건비, 업무에 소요되는 직·간접경비, 용역비·수리비 등 재산 경비, 위탁 수수료

*위탁수수료 : 개발수수료(개발보수, 개발비용(원리금),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 매년 수탁기관은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활용하여 개발비용 상환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8조(위탁사무의 계산)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비용 등을 충당한 후 남은 수익을 위탁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작성자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원경진(2133-744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자료 참조

□ 소요예산 : 총39,142백만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지출	○ 민간위탁금	2,535,153	7,864,901	8,100,849	8,343,874	8,594,190	35,438,967
	인건비	1,505,206	3,269,357	3,367,438	3,468,461	3,572,515	15,182,977
	운영비	377,746	1,149,403	1,183,885	1,219,402	1,255,984	5,186,420
	사업비	484,138	2,924,752	3,012,495	3,102,869	3,195,955	12,720,209
	일반관리비 및 위탁수수료	168,063	521,389	537,031	553,142	569,736	2,349,361
	○ 민간위탁사업비	1,940,000	30,000	30,900	31,827	32,782	2,065,509
	도서구매비	765,000	30,000	30,900	31,827	32,782	890,509
	자산취득비	1,175,000	0	0	0	0	1,175,000
	○ 공기관위탁사업비	92,320	369,282	380,360	391,771	403,524	1,637,257
	소계(a)	4,567,473	8,264,183	8,512,109	8,767,472	9,030,496	39,141,733
수입	○ 프로그램 이용료	353,190	2,099,160	2,162,135	2,226,999	2,293,809	9,135,293
	체육프로그램	128,160	512,640	528,019	543,860	560,176	2,272,855
	문화프로그램	62,400	499,200	514,176	529,601	545,489	2,150,866
	연수프로그램	162,630	1,087,320	1,119,940	1,153,538	1,188,144	4,711,572
	○ 대관료	20,800	124,800	128,544	132,400	136,372	542,916
	소계(b)	373,990	2,223,960	2,290,679	2,359,399	2,430,181	9,678,209
□ 총 비용(a-b)		4,193,483	6,040,223	6,221,430	6,408,073	6,600,315	29,463,524